



□ 환경부

1) 그린회계

그린회계는 단지 새로운 환경상의 개념이 아니고, 산업혁명시대까지 소급하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기술적 불균형을 수정하려는 오랜동안 필요로했던 접근방법이라고 유럽환경위원회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WTO가 새로운 그린 GATT 라운드를 주선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시장의 가격체계는 환경규제를 통한 캡을 줄이려 하지말고 환경과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의 질의 가치를 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서 가장 우선적인 새로운 접근방법은 가격체계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시장기능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절한 조세나 다른 경제도구를 이용하거나 정부조치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의 노동절약적인 기술에서 앞으로는 자원절약적인 기술로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보조금과 기준설정 입법은 이를 고무하도록 이용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개발추진에 사용가능한 재정적이면서 경제적인 도구의 실례로 이산화탄소/에너지 및 다른 방출량에 대한 물품세, 실질적인 환경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자동차와 재산에 대한 직접세의 개정, 전기, 수도, 하수도에 대한 누진적인 요금, 오염허가제의 거래, 그리고 환경투자에 대한 재정적 동기부여 등을 인용했다.

2) ISO 14000

새로운 국제적, 자발적 환경관리 시스템 기준하에 유자격으로 인정받은 회사는 연방정부지침에 의하여 성실한 준수 노력에 대한 신용을 받게 된다고 미국환경보호청 관계자는 밝혔다.

한회사가 새로운 기준하에 얼마나 많은 크레딧을 받는가는 최종안에 달려있다고 환경보호청 관계자가 밝혔으며, 환경관리 시스템의 획기적인 안은 국제표준기구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는 ISO 14000이다.

새로운 기준하의 크레딧 인정은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나라에 관계없이 환경법규 위반을 예방하거나 발견해내는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ISO 14000은 환경감시와 환경관리의 두 요소로 되어 있으며, 다른 모든 기준과 같이 자발적 준수사항이다.

동 관계자는 ISO 14000하의 크레딧인정은 환경기준을 위반한 회사가 성실하게 이행한 조치를 증명해주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ISO 14000하의 등록은 회사가 연방법원에 환경법의 성실한 준수를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환경보호청은 ISO 14000을 환경법규준수확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청은 환경감시는 대기업에 의하여서는

GATT 회원국으로서 WTO에 가입하지 못한 스위스 등
47개국으로서 WTO협정 발효 후(1995년 1월 1일까지) GATT
비회원국과 같은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명 또는 수락서
기탁만으로 WTO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인하 등 제반의무는
WTO협정 발효시점에서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WTO협정 발효 후 2년이 경과하면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체에서도 이러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환경법 준수지원을 제의하고 있다.

동 관계자는 ISO 14000은 한 회사의 환경법 준수나
수행사항을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며 차라리 이러한 기
준은 회사가 운영되어지는 수단을 대상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ISO 14000하에 요구되는 관리체제는 보다 나은 환
경이행상황을 이끌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보호청은 ISO 14000에 회사의 참여는 회사의
환경이행상황을 도모하고 계속적인 환경개선을 고무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SO 14000하의 등록은 ISO 9000하의 크레딧 인정과
같이 중요하며, ISO 9000은 효과적인 품질관리체제의
기준이다.

ISO 9000의 준수는 국제시장에서 상품을 팔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ISO 14000하의 크레딧 인정은 특히 구매자가 환경적
으로 전전하게 설계되고, 환경관리체계를 보유하는
기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제품을 원활 때 시장의 한 공
식 스템프를 보유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환경보호청
관계자는 밝혔다.

ISO의 기술위원회 207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30여
개 이상의 국가는 두개의 구성요소의 초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95년 1월 두개의 초안은 ISO에 의한 조정과정에서
개진된 의견을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기술위원회
207 구성원 국가는 6월까지 조정된 초안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되며, 승인된다면 ISO 14000은 국제적인
기준의 초안이 되며 약 100여개 국가사이에 흘
람될 것이다.

국제기준이 되려면 적어도 75%의 구성원국가가 IS-
O 14000의 두 가지 기본요소에 찬성하는 투표를 하여
야하며 동 투표는 '95년 말 경으로 예정된다. 그 밖에

ISO 14000의 다른 두 부분, 즉 환경마크와 제품일생평
가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어느 것이나 강제등
록성은 띠지 않으며, 제품일생평가와 환경마크 부분은 '99년까지 마쳐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IBM사 관계
자는 밝혔다.

GATT과 WTO의 관계

WTO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일본, 카
나다, 홍콩, 아세안국가, 호주, 북구국가 등 주요무역
국 81개국을 원회원국으로 하여 '95년 1월 1일 출범하
였다.

GATT 회원국으로서 WTO에 가입하지 못한 국가는 스위스 등 47개국으로서 WTO협정 발효 후 2년내에는 ('96. 12. 31까지) GATT 비회원국과 같은 별도의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서명 또는 수락서 기탁만으로 WTO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인하 등 제반의무는 WTO협정 발효시점에서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WTO협정 발효 후 2년이 경과하면 별도의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GATT 비회원국으로서 WTO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요 이해관계국들과 협상을 통해 가입조건을 확정하고, WTO 각료회의에서 회원국 2/3 다수결로 동 가입조건을 승인함으로써 가입할 수 있다.

WTO와 GATT의 법적관계를 살펴보면 GATT협정은 일부가 수정된 형태로 WTO협정에 포함되어 있으
며, WTO협정에는 WTO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
성하는 17개 다자간 무역협정이 부속되어 있는데 이
수정된 GATT협정은 17개 다자간 무역협정의 하나이다.

(※ 기존의 GATT(수정되기 전의 GATT)와 WTO에
포함된 수정된 GATT를 구분하기 위해 기존의 GATT
와 1947년도 GATT로, 수정된 GATT는 1994년도 GA-

TT로 지칭한다)

1947년도 GATT와 1994년도 GATT는 법적으로는 서로 별개의 협정이며 WTO협정 제2조 4항은 1947년도 GATT와 1994년도 GATT가 법적으로 구별됨을 (legally distinct)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1947년도 GATT는 WTO의 출범후에도 법적으로 계속 유효하며, WTO와 공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GATT와 WTO의 공존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무임승차 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며 WTO 회원국이 1947년도 GATT에 계속 잔류할 경우 WTO에 가입하지 않은 GATT회원국에 대해서도 GATT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따라 WTO협정상의 제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면 WTO에 가입하지 않은 GATT회원국은 WTO 협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소위 무임승차(free-riding)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분쟁해결절차의 이원적 운영에 따른 문제로서 종전 GATT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진행중인 분쟁(약 30개)의 처리문제에 관한 당사국간의 입장이 상충될 가능성이 높으며 GATT와 WTO가 각각 독자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운영하게 되므로 특정 분쟁당사국이 한 기구에서 패소할 경우, 다른 기구의 분쟁해결절차에 다시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각종 기구의 이원화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에서 이사회, 국제수지·반덤핑·보조금위원회 등 각종 기구가 중복운영되어야 하므로 사무국 뿐만 아니라 회원국에도 과중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관련하여 미국은 이러한 GATT와 WTO의 공존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WTO출범후 GATT를 탈퇴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였고 일본, EU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의 GATT 탈퇴를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WTO회원국이 1947년도 GATT를 탈퇴하게 되면 WTO에 가입하지 못한 GATT 회원국들과의 무역관계를 규율할 법적 장치가 없어지며 1949년도 GATT하에서 분쟁해결절차가 진행중인 분쟁은 대부분이 미국과 관련된 것인 바, 미국이 GATT를 탈퇴하게 되면 해당 분쟁해결절차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미국과 여타국이 '94년 12월 8일 WTO 이행회의에

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한 경과조치를 살펴보면 첫째, 1947년도 GATT의 한시적 존치로서 1947년도 GATT는 WTO출범후 1년간만('95. 12. 31까지) 존속시키고 1년 경과후에는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단, 필요한 경우 1947년도 GATT 회원국간 합의로 1년 범위내에서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1년간은 GATT 회원국중 WTO 회원국과 WTO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간의 무역관계에는 1947년도 GATT가 계속 적용될 것이다.

둘째, 무임승차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WTO 회원국이 아닌 GATT회원국에 대한 차별조치를 허용하여 최혜국대우원칙에도 불구하고, WTO회원국이 WTO회원국이 아닌 GATT 회원국에 대하여 관세인하 등 WTO 협정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각종 기구의 중복운영을 회피하여 GATT와 WTO하에서 중복설치된 기구들이 회의의 연속개최 등 서로의 활동을 긴밀히 조정토록 하므로써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넷째, 기존 분쟁해결절차의 한시적 운영으로 1947년도 GATT하에서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사안은 1년간 기존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토록 하였으며 다만 반덤핑 및 보조금관련 분쟁은 예외적으로 2년간 기존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당 사안이 동 기간중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분쟁해결절차는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한편,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사안은 1947년도 GATT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4) 지구 온난화 문제

지구온난화를 반영하는 대기중의 수분증발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오존층 파괴를 부추기는 요인인 될 수도 있다고 미국 과학자들이 밝혔다.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에 있는 국립해양대기국(NOAA)의 기상학자들은 81년부터 94년까지 기상과 기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증기량을 측정한 결과 성층권 하단에서 수증기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과학전문지 네이처에서 밝혔다.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들은 이른바 '온실효과'로 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감시기구를 구성한다.
가스방출상황을 매년 측정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마련한다. 또한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한다.

리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새로운 발견이 이같은 증거를 보강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류권 상층부와 성층권 하단부에서 일어나는 수증기에 대한 제한된 지식은 기후모형 설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돼왔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또 불더지역 상공의 대기층에서 수분증발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함으로써 온실효과를 낳는 기체의 증가와 이를 기체가 기후 및 대기중의 화학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증기 측정이 한 곳에서만 이뤄졌다는 제한성을 갖고 있지만 인구밀집지역인 북부 및 중부 위도 상의 대기권을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증기는 오존을 형성하거나 파괴하는 화학적 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수분증발의 증가는 오존층 파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NOAA 연구진은 경고했다.

한편 리우데자네이루 환경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줄이겠다는 다짐을 등한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국의 단호한 대응이 없다면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환경보호단체인 월드워치가 경고했다.

워싱턴 소재 월드워치는 최근 발표한 <온난화 그 대처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환경조약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이 줄어들기는커녕 현상유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사용은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1인당 방출량은 세계평균의 5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지구온실효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수준이 더욱 늘어날 경우 대기와 해양의 순환을 혼란

시켜 가뭄과 열파, 폭풍우 등의 이상현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지구 온난화는 식량생산에도 파급영향을 미쳐 식량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리스토퍼 플래빈과 오딜 투날리氏 등 2명이 공동 연구한 이 보고서는 지구온난화에 관한 한 산업국가뿐 아니라 개도국들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브라질, 터키, 인도 등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급등하고 있고 중국은 세계 제2위의 방출국으로 미국을 따라 잡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91년 필리핀의 화산폭발로 일시 일어났던 냉각현상이 이미 끝났으며, 지난 94년은 금세기에서 네번째로 온난화현상을 보였던 1987년에 필적할 정도로 따뜻한 해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다음과 같은 대책을 건의했다.

▲ 3월 하순 리우조약을 이행·강화하기 위한 베를린 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조약상 2천년의 필요조건을 명확히 한다. 또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산업국가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앞으로 5년간 조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조약에서 축출한다.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방출하는 25개국가의 가스방출상황을 매년 측정하고 환경정책 등을 추적하는 국제적인 감시기구를 구성한다.

▲ 가정용기 및 산업장비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기준이 될 모델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한 개도국들이 그 기준에 부응하는 설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한다.

▲ 태양·풍력 및 에너지 효율계획의 연구·추진을 위한 대규모 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국제금융공사(IFC)와 협력한다. ◀